

## 관례를 통해 본 중국의 제조물책임주체

이 시 환\*

- 
- I. 서론
  - II. 제조업자
  - III. 판매자
  - IV. 소송 중 책임주체(피고)의 추가 및 피해자의 선택권
  - V. 결론
- 

### I. 서 론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시작한 것이 1992년의 일이다. 그 후 양국간의 거래가 급속히 늘어나 2002년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으로, 그리고 2004년에는 최대교역국으로 등장하였다. 돌이켜보면 수교당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은 63억불에 불과 하였으나 2004년에는 793억불, 2006

---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년에는 1,180억불, 2007년에는 1월에서 11월말까지 이미 1,321억불에 이르고 있다.<sup>1)</sup> 그리고 투자액은 1992년 1억 4천만불에서 2002년에는 10억 4천만불, 2006년에는 33억불, 그리고 지난 2007년에는 9월말까지 이미 35억불에 이르고 있다.<sup>2)</sup> 그런데 이와 같이 중국과의 거래가 늘어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분쟁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른바 제조물 책임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된 법규들이 제정되어 왔다. 중국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법규로서는 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②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질량법(產品質量法: 이하 “제조물품질법”이라 한다), 그리고 ③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세 가지가 있다.<sup>3)</sup> 따라서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무역업자,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여 이러한 법규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소송의 재판관할권은 피해발생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지만<sup>5)</sup> 아직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분야가 많이 있다. 제조물책임주체에 관한 연구도 그 하나이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요체이지만 누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가 하는 제조물책임의 주체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제조물책임의 부담자이

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국가별수출입(gikt3010i).

2) 한국 수출입은행, 국가별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nexim.go.kr/kr/oeis/m03/s01\\_0401.jsp](http://www.koreanexim.go.kr/kr/oeis/m03/s01_0401.jsp); 2008.1.3)

3) 이들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시환,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4권, 2007, pp.5-7 참조.

4) 한국조선공업협회 정책개발팀, 주요국 제조물 책임법 현황, 2003.11, p.3.

5)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허재창·한낙현, “중국의 제조물책임관련법규와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5권, 2005.

② 최병록, “중국 제조물책임(PL)법의 동향” [www.klri.re.kr/project/h\\_AsiaPublish.nsf/](http://www.klri.re.kr/project/h_AsiaPublish.nsf/)

③ 이시환, 전제 논문 및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22권 제2호, 2007.

다.6)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주체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및 표시제조업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인 민법통칙 및 제조물품질법상 주요한 제조물책임 주체로서는 제조물의 제조자, 판매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규에서는 제조업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이 논문은 중국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제조업자와 판매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중국과 교역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에 도움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제조업자

대부분의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유일한 또는 주된 피고는 손해를 입힌 제조물을 설계·생산 및 판매한 제조업자가 된다.7)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제조물품질법 제41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인신 및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제조업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속하는데, 이러한 엄격책임의 채용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유리하다. 즉 피해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생산자의 품질 제고, 결함 감소를 촉진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8)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제품의 생산·판매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제조자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상품거래의 국제화로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아져 피해자가 자국 내에

6) 鄭遠民·李志春·朱紅梅·唐海清, 產品質量事故認定與法律處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p.132.

7) David G. Owen & Jerry J. Phillips, Products Liability(7th ed.),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2005, p.419.

8) 中國法制出版社 編, 產品質量案件,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pp.239.,

서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다.<sup>9)</sup> 따라서 각국의 입법 및 일련의 국제협약에서는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sup>10)</sup> 및 오인표시제조업자이다.

또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

2.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라고 당해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의 표시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3. 전 호에 게재한 자 이외,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관련 형태 기타 사정에서 볼 때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자“

한편 EC의 「제조물책임지침」<sup>11)</sup>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9)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p.177.

10) OEM방식의 제조물에 있어서 해당 제조물의 진정한 제조업자 뿐 만이 아니라 그 제조물이 자신이 제조한 제조물인 것처럼 판매한 자도 표시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강동근, 윤종성, 제조물책임법, 가림M&B, 2002. p.105.).

“① ‘제조사’란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 또는 부품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② 판매, 대여, 리스, 기타 업으로서 배급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 내에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자는 본 지침상 그 제품의 제조자로 간주하며,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품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품의 제조자 성명은 표시되어 있지만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해서 제조자 또는 그 제품을 자기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 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EC의 「제조물책임지침」에 규정된 제조물 제조업자의 범위는 매우 넓어 완성품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 및 제품에 그 성명·상표 또는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라고 표시한자, 그리고 수입업자까지 모두 제조물의 제조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sup>12)</sup> 또한 1977년 1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성립된 「신체상해 및 사망에 대한 제조물 책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Products Liability in regard to Personal Injury and Death) 제3조 2항도 “자기의 이름, 상표 또는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제품상에 하여 제품을 자기의 제조물로 표시한 자는 모두 이 협약에서 말하는 제조업자로 본다. ...”<sup>13)</sup>고 규정하고 있다.

11) 이 지침의 정식 명칭은 「결합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균일화를 위한 1985년 7월 25일 EC 각료이사회지침(Council Directive of July 25,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85/374/EEC)으로서 1999년에 일부개정(1999/34/EC)되었다.

12) Helen Delaney & Rene van de Zande, A Guide to the EU Directive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Product Liability Directiv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1, p.3.

13) ... and any person who has presented a product as his product by causing his name, trademark or other distinguishing feature to appear on the product, shall be deemed to be producer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and .....

그런데 중국의 경우 「민법통칙」이나 「제조물 품질법」에 “제조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랫동안 실무상 제조업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왔다.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제조물의 직접 제조자로 이해하고, 소송에서 제조물의 상표소유자, 부품제조업자 등이 피고가 되는 경우를 일체 배제하여 이들이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해 왔다.<sup>14)</sup>

그러던 중 1995년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에서 제조업자의 범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다. 그 사건은 형기렴(荊其廉), 장신영(張新榮) 등이 미국 GM사(General Motors Corporation)와 미국 GM 해외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상표소유자 등이 제조업자의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의 하나였다.

## 1. 사건의 개요<sup>15)</sup>

1995년 8월 6일 형기렴의 아들 형우창(荊宇昌), 장신영의 아들 장학군(張學軍) 등이 운전하던 京 C-24594호 시보레(Chevrolet) C-20 승용차의 내몽고 경내에서 발생한 전복사고로 형우창과 장학군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고발생 후 형기렴은 차축이 절단되어 전복되고 그 결과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GM 해외회사 북경사무소(이하 “북경사무소”라 한다)를 방문, GM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1996년 3월 북경사무소는 사고현장에 직원을 파견 조사를 진행하고 또한 형기렴으로부터 절단된 차축을 받아 갔다. 당해 사무소는 그 후 절단된 차축을 GM 아시아주 회사 고객센터센타에 인도하였다고 하였다. 1996년 5월 31일 고객센터센타는 형기렴에게 편지를 보내 시보레 C-20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GM사가 보험에 가입한 북미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교부, 북미보험회사가 전권을 가지고 GM사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사고의 변상 및 조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1997년 3월 18일 북미보험회사는 형기렴에게 편지를

---

14)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게서, p.237.

15) 舒丹 編, 人民法院案例與評注(民事八卷),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pp.93-95.

보내 GM사 기술자의 검토결과 차축 절단은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품질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1997년 4월 형기림은 다시 미국 GM사에 편지를 보내 배상을 요구하였다. 동년 6월 11일 북미보험회사는 형기림에게 편지를 보내 거듭 이 사고는 품질문제와 관련이 없고, 왼쪽 뒤 차축 절단은 충돌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북경사무소는 부러진 차축을 형기림에게 되돌려 주었고 형기림은 부러진 차축이 이미 바뀌치기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2. 심리 및 판결

북경시 공안 교통관리국 차량관리소 차량 등기부에 의하면 京 C-24594의 시보레 C-20 승용차는 GM 브라질회사(이하 “GM Brazil”이라 한다)가 생산하여 계림 여행물자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중국 강화식품음료회사가 사서 사용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당시 당해 차의 소유주는 북경시에 있는 회사(宏大環保節能新技術會社)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GM Brazil사가 생산한 사고 자동차(京 C-24954)는 미국 GM사가 등록한 시보레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형기림, 장신영은 미국 GM사와 GM 해외회사를 각각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 500만 위안(元)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심리 중 GM Brazil사는 사고차를 생산하고 중국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고, 중국 법률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송달된 기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로서 출정하고자 하였다.

북경시 제2 중급인민법원에서는 GM사와 해외회사의 소송지위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하나의 의견은 중국 민법통칙 제122조16)에 의거 실질적 책임부담자는 제

---

16)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1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품질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신체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운송인, 창고업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조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자, 즉 GM Brazil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GM Brazil사를 분리하여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원고를 설득하여 소송을 철회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소송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의견은 비록 사고차가 GM Brazil사가 생산한 것일지라도 시보레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고 차의 상표소유자인 GM사는 상표 허가를 받은 GM Brazil사와 함께 공동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GM사와 GM Brazil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외회사의 소송지위에 관한 위의 두 가지 의견은 모두 원고가 해외회사에 제기한 배상청구는 또 다른 하나의 법률관계이며, 해외회사는 제조물품질책임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두 번째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질의하였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GM사의 소송지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상표등록자는 사용허가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그런데 만약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물 품질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표등록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중국 상표법 제26조가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 등록상표의 상품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의 입법취지가 결코 허가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GM사는 GM Brazil사의 모회사이고, GM Brazil사는 GM사의 허가에 의거 시보레 상표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상품의 제조자는 GM Brazil사이다. 따라서 상표소유자인 미국 GM사와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GM Brazil사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법률상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회사의 소송지위에 관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비록 원고가 해외회사에 제기한 배상청구가 또 다른 하나의 법률관계이긴 하지만, 해외회사는 제조물품질책임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상황, 즉 해외회사 북경사무소가 이미 사고의 처리자로서 분규에 개입하였고, 부러진 차축을 국외로 반출하여 품질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소송에서 부러진 차축이 이미 바뀌었고 따라서 해외 회사는 그에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의 처리결과와 해외회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회사를 소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소송주체문제에 있어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GM Brazil사, CM 해외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2001년에 최고인민법원에 《형기림, 강신영 등이 미국 GM사, 미국 GM 해외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의 소송주체 확립문제 처리결과에 관한 지시 요청》<sup>17)</sup>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002년 7월 11일자 法釋(2002)호를 통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sup>18)</sup>

“자기의 성명, 명칭, 상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표시를 제조물에 하여 그 제조물 제조자로 표시한 기업 또는 개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22조에 규정된 ‘제조물의 제조자’ 및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 품질법》에 규정된 ‘제조업자’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중 미국 GM사는 사고 차의 상표소유자로서, 피해자의 소송제기 및 이 사건의 실제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GM사, GM 해외회사, GM Brazil사를 피고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제조물의 상표소유자 및 제조물에 자기의 성명, 명칭 등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표시를 하여 제조물의 제조자로 표명한 자, 즉 표시제조업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던 제조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17) 《關於荊其廉，張新榮等訴美國通用汽車公司，美國通用汽車海外公司損害賠償案訴訟主體確立問題處理結果的請示報告》

18) 《最高人民法院關於產品侵權案件的受害人能否以產品的商標所有人爲被告提起民事訴訟的批復》

### 3. 중국에서의 제조업자의 정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에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및 표시제조업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EC의 「제조물책임지침」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완성품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까지 제조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 제조자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랫동안 실무에서 제조업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왔다. 그러던 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5년에 발생한 한 사건에서의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계기로 하여 중국에서도 제조업자의 개념을 제조물의 직접 제조자에서 확대하여 제조물의 상표 소유자 및 자기의 성명, 명칭 등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표시를 제조물에 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로 표명한 자, 즉 표시제조업자도 제조물 제조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중국의 제조업자의 범위가 종래에 비해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입업자나 부품제조업자가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 제조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 Ⅲ. 판매자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 가공, 수입업자 즉 제조업자가 원칙적인 책임 주체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업자(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서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주체로 보고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판매자는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sup>19)</sup>

그런데 중국의 경우 제조물 품질법상 책임주체에는 제조자 뿐 만이 아니라 판매자도 포함되어 있다. 즉 중국 제조물 품질법은 제42조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여 인신, 타인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록 과실책임(fault liability)원칙이긴 하지만 판매자도 원칙적인 책임주체로 보고 있다. 나아가 또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적시할 수 없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적시할 수 없을 때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엄격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영리목적으로 제조물을 생산영역에서 소비영역으로 인도하는 자로서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지만<sup>20)</sup>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판매자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매자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로서 원고 지응진(支應震) 등이 산둥성 안구현(安丘縣)에 있는 성녕공장(이하 “안구시 성녕공장”이라 한다)이 생산하고 청도 송변전 시공회사가 판매한 난방기 폭발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청도 송변전 시공회사(이하 “송변전회사”라 한다)와 안구시 성녕공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있다.

## 1. 사건의 개요<sup>21)</sup>

원고 지응진은 청도 송변전회사 직원이다. 안구시 성녕공장은 허가를 받고 초를 입힌 성냥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이다. 그런데 이 공장은 사업범위를 벗어나 1990년부터 “구지(求知)”표 난방기를 조립 생산해 왔다. 1991년 안구시 성녕공장은 송변전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자금이 없어 쌍방의 합의에 의해, 당해 공장이 조립 생산한 600대의 “구지”표 난방기로 그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송변전회사는 난방기 합격증과 검사보고서를 검토

19) 허제창, “한국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7권 제3호, 2002, p.183.

20) 蔣飛云, 產品質量 200問,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p.251.

21) 舒丹, 전게서, pp.86-87 및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게서, pp.223-224.,

한 후 먼저 10대를 시험용으로 가져가고 나중에 나머지 590대의 난방기를 본사로 운반해 주도록 하였다. 송변전회사는 그 중 8대의 난방기를 대당 270 위안의 가격으로 본사 직원들에게 판매하면서, 직원들로부터는 90 위안을 받고 나머지 180 위안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충당하였다. 송변전회사 직원이 사용과정 중 모두 10여대의 난방기에 여러 가지 품질문제가 발생, 송변전회사는 안구시 성냥공장에 반송하여 수리 또는 교체해 주도록 하였다. 다만 송변전회사는 이와 유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3년 3월 3일 새벽 4시경 지웅진 일가가 사용하던 난방기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지씨 일가 세 사람, 즉 지웅진과 처 설혜분(薛惠芬) 및 11살 짜리 아들 지전동(支傳東)이 모두 화상을 입었다.

1993년 9월 13일 지웅진 등 세 사람은 송변전회사가 위탁 판매하던 “구지”표 난방기의 제조물 품질이 열악하여 진 가족의 신체,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산둥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송변전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송변전회사는 “난방기를 복리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직원들과 합자하여 구매하고 공동으로 소비한 것이다. 비록 일정한 비용을 받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행위에 속하지 않아 제조물책임의 부담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2. 심리 및 판결<sup>22)</sup>

### (1) 1심 판결

청도시 중급 인민법원은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송변전회사는 채무대신 안구시 성냥공장이 생산한 “구지”표 난방기를 받았고, 지웅진은 일정한 경비를 지급한 후 송변전회사로부터 난방기 한 대를 받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 송변전회사의 행위는 제조물판매행위에 해당한다. 안구시 성냥공장은 사업범위를

22) 舒丹, 전게서, pp.87-89 및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게서, pp.224-225.,

벗어나 난방기를 생산하였고 또한 제조물품질이 불합격이다. 원고 일가가 난방기를 사용할 때 난방기가 갑자기 폭발, 원고 세 사람이 화상을 입었는데, 원고의 화상은 양 피고가 생산·판매한 난방기의 품질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양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 피고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 (2) 2심 판결

1심 선고 후 원고가 배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복, 상소하였다. 송변전회사도 또한 불복, 당해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90원을 받고 직원에게 180원을 보조하여 복리후생 형식으로 직원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합자구매이고 공동소비의 형식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판매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 및 민사책임부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소하였다.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상소인 지웅진 일가는 신체상해를 당하고, 재산 손해를 입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 그리고 당해 신체상해 및 경제적 손실과 그들이 사용한 안구시 성냥공장이 생산한 “구지”표 난방기에 존재하는 결함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한편 안구시 성냥공장은 사업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구지”표 난방기를 생산하였고,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또한 비정상적인 절차로 “합격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웅진 일가에게 발생시킨 손실에 대하여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송변전회사는 안구시 성냥공장에서부터 채무를 물건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구지”표 난방기를 취득하여 자기 회사 직원에게 판매, 직원으로부터 대금 90 위안을 받고 나머지 180 위안은 복리비로 충당한 바, 이러한 행위는 판매행위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송변전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난방기에 품질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법에 따라 2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 품질법」 제30조<sup>23)</sup>,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2조<sup>24)</sup>, 「중화인민공화국 민

23)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 제30조(1993년 2월 22일 공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법통칙」 제122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호의 규정<sup>25)</sup>에 의거 송변전회사와 안구시 성냥공장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 3. 판매자의 정의

이 사건에서 쟁점의 하나는 송변전회사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자에 속하는가의 여부이다. 이 문제는 송변전회사가 피고가 될 수 있는 소송주체자격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실제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과도 관계가 있다. 송변전회사는 소송에서 직원과 합자로 난방기를 구매하여 공동으로 소비하였고, 비록 난방기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받긴 하였지만, 그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판매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송변전회사가 판매자인가의 여부는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sup>26)</sup>

① 송변전회사의 직원은 이들 난방기의 실제사용인으로서 그들은 소비자에 속하며, 그들은 송변전회사로부터 난방기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

있는데, 이 규정은 2000년 7월 제조물품질법의 개정에 따라 제42조로 변경되었다. “판매자의 과실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여 신체, 타인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판매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야 한다. 판매자가 결함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적시할 수 없고, 결함제조물의 공급자도 적시할 수 없을 때에는 판매자가 배상책임을 지야 한다”

24)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장례비, 사망배상금 및 당해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자의 필요생활비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심의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에 대하여 재판한 후 아래 상황에 따라 분별하여 처리한다.

(3) 원판결의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원판결의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증거 부족을 인정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판정하고 원심의 인민법원에 반환하여 재판결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정확한 사실을 조사한 후 판결을 번복한다.”

26) 舒丹 編, 전게서, pp.90-91 및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게서, pp.225-226...

인 직원들에게 난방기를 공급한 송변전회사 역시 소비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② 송변전회사는 시장에서 이들 난방기를 구매할 것이 아니고, 또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소비의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채무자가 채무를 다른 물건으로 상환하는 특수유통방식으로 난방기를 취득하는 것은 실질상 원 계약관계의 의무내용의 전환이다. 취득 후 송변전회사가 실현한 것은 채권자의 채권회수이고 소비 그 자체는 아니다.

③ 송변전회사는 비록 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는 아니지만 법률에 규정된 “판매자”역시 전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바꾸어 말하면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모두 법률에 규정된 “판매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송변전회사는 직원들로부터 비록 전체금액을 수취하지 않고 일부 가격만을 수취하였고, 나머지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충당하였지만 실질은 전체 가격을 수취한 것이고 다만 소비자인 직원이 전체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은 데에 불과하다. 이러한 화폐와 실물의 교환관계에서는 화폐를 취득한 일방을 판매자라고 하여야 한다.

④ 이러한 판매는 또 대량판매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판매이다. 비록 직원과 회사 사이는 특수한 관계지만 그것은 특정한 노동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다. 회사의 직원에 대한 판매는 누구든 대금을 지급하면 판매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전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판매에 속한다.

⑤ 판매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영리목적 여부가 필요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송변전회사의 행위는 당연히 판매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변전회사는 판매자로서 소송 및 실제 책임의 주체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송변전회사를 피고로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상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를 전업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영리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물건을 팔기만 하면 제조물 책임주체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IV. 소송 중 책임주체(피고)의 추가 및 피해자의 선택권

제조물책임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책임주체를 추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책임주체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이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로 초위(肖威)가 진홍(陳紅) 등을 상대로 폭죽이 손에서 폭발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다.

##### 1. 사건의 개요<sup>27)</sup>

1998년 1월 26일(음력 정월 초하루) 오후 원고 초위와 친구 왕침익(王添翼), 황승(黃勝) 등 3명이 함께 거리에 나가 놀다가 피고 진홍, 황선영(黃先榮) 부부가 경영하는 “춘춘상점”(春春商店)에 가서 상표도 없고, 공장표시, 경고표시, 제조물합격증도 없는 폭죽을 초위와 왕침익이 각각 5개씩 샀다. 그 후 세 사람은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리어강 중의원(鯉魚江 中醫院) 정문부근의 낚시터에서 폭죽을 터뜨렸다. 초위가 두 번째 폭죽을 터뜨릴 때 미처 밖으로 던지기 전 폭죽이 손에서 터져 왼쪽 손을 크게 다쳐 리어강 중의원에서 15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1998년 2월 4일 초위의 후견인이 호남성 자흥시(資興市) 소비자협회에 신고하였고, 3월 2일 소비자협회는 호남성 침주시(郴州市) 제조물 품질검사소에 위탁, 피고 진홍, 황선영 가게에서 상처를 입힌 폭죽과 같은 종류의 제조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 당해 제조물이 치명적인 불합격제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 후 소비자협회가 주관한 중재가 불발로 끝나 원고는 1998년 3월 6일 자흥시 인민법원에 판매자 진홍, 황선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8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진홍, 황선영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물품공급자 또는 생산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7) 中國法制出版社 編, 상계서, p.219.

## 2. 심리 및 판결

자흥시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수리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진홍과 황선영 및 소송 외의 문금화(文金花)와 사약휘(謝躍輝) 모두 잡화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998년 1월 소송 외의 방요개(方堯改)와 사발림(謝發林)은 자흥시 삼강진(蔘江鎮)으로부터 몇 상자의 폭죽을 리어강으로 가져와 사약휘에게 판매하였다. 구평안(邱平雁)은 노점상으로 문금화, 사약휘와 협상, 문씨 사씨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폭죽 수십 봉을 가져왔다. 그 후 진홍, 황선영도 구평안으로부터 당해 폭죽을 샀고 그 중 원고에게 5개를 팔아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거 당해 법원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가 피고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자흥시 인민법원은 심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초위가 폭죽의 품질불합격으로 상처를 입었으므로 배상을 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중 방요개, 사발림이 불합격품인 이른바 “삼무”<sup>28)</sup>폭죽을 생산 및 판매한 것은 초위가 상처를 입은 주요한 원인이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홍, 황선영은 영업 중 불합격 폭죽을 직접 미성년자 초위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문금화, 사약휘는 잡화점을 공동경영하면서 구매한 폭죽이 “삼무”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해 왔다. 구평안 역시 당해 불합격 폭죽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그 구매 및 판매방식 모두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모두 상응한 책임이 있다. 초위는 13살에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이고 그 후견인은 상해결과에 대하여 역시 보호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배상 청구한 손해액 8만 위안은 법률규정 범위 내에 있어 지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98조<sup>29)</sup>, 제119조<sup>30)</sup>, 제122조, 제130

28) 3무제품은 생산허가증, 제품검사필증, 생산회사명과 주소가 없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상표, 공장주소 및 생산일자의 세 가지가 없는 상품을 가리키기도 한다(손예철, 동아프라이미 中韓辭典, 두산동아, 2007, p.1,725).

29) 중국 민법통칙 제98조는 “공민은 생명건강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중국 민법통칙 제119조는 “공민의 신체를 침해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비·휴무로 인하여 감소된 수입·장애인생활보조비 등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사망에 이르게

조31), 제133조<sup>32)</sup>, (당시의)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 품질법 제30조, 제31조<sup>33)</sup>, 제32조<sup>34)</sup>,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0조<sup>35)</sup>, 제41조<sup>36)</sup>의 규정에

---

한 경우에는 장례비·사망자생전에 부양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등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1) 중국 민법통칙 제130조는 “2인 이상 공동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2) 중국 민법통칙 제1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민사행위무능력자·민사행위능력제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호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감호인이 감호책임을 다한 경우 그의 민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재산이 있는 민사행위무능력자·민사행위능력제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본인재산 중에서 배상비용을 지불한다. 부족한 부분은 감호가자가 적당한 배상을 하고, 다만 기관이 감호자를 담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3)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31조(2000년 개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신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제조자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의 판매자는 제조물제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을 배상한 경우 제조물 제조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제조물의 제조자는 제조물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배상한 경우 제조물의 판매자에 대해서 구상할 권리가 있다.”
- 34)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의료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벌지 못한 수입,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보조금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장례비, 조위금, 피해자가 부양하던 자가 필요한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원상회복 또는 가치감소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에 의해서 그 외의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35)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상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2) 상품이 당연히 구비하여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않았으면서도 판매시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명확히 밝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상품 설명, 실물 견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생산 국가가 법령으로 도태시킨 상품 또는 판매기한이 지나 변질된 상품인 경우  
(6) 판매한 상품 수량이 부족한 경우  
(7)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8) 소비자가 제출한 수리·재제작·교환·반품·상품수량보충·상품대금과 서비스비용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경우  
(9) 법률·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 36)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거 자흥시 인민법원은 각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 후 쌍방 당사자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 3.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

이 사건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제조물이 폭발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장애가 발생,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자흥시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제조물 품질법, 그리고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993년의 제조물 품질법 제31조(2000년 개정 후의 제4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타인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제조물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sup>37)</sup>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접 판매를 한 진홍, 황선영 부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해 선택된 판매자 또는 생산자는 일단 모든 제조물품질손해 배상책임, 즉 독립적으로 전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sup>38)</sup>. 법률상 이렇게 규정한 목적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시에 유효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책임비율확정 지연이 피해자에 대한 적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sup>39)</sup>

한편 손해를 배상한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그 책임의 귀속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구상할 권리가 있다.

---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치료기간의 개호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벌지 못한 수입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장애자의 생활자립기구비, 생활보조비, 장애배상금 및 당해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의 필요생활비 등의 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7) 張慶·劉寧·喬棟, 產品質量責任--法律風險與對策, 北京, 法律出版社, 2005, p.75.

38)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개서, pp.226.

39) 상개서, p.222. 및 p.226.

그리고 피해자가 가령 판매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기소한 경우 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귀책원칙에 따라 판매자와 생산자가 모두 독립적으로 원고에 대해 전체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주체로 확정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가 적시에 유효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자와 생산자 상호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소송과정에서 책임 주체(피고)의 추가 가능 여부

이 사건의 심리과정 중 인민법원은 판매자의 신청에 의거 중간 전매자 및 폭죽의 생산자를 사건의 당사자로 추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사건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피해자에 의해 선택된 판매자 또는 생산자는 일단 모든 제조물품질손해 배상책임, 즉 독립적으로 전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법원이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배상주체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당해 배상주체의 책임 유무 및 책임이 있는 경우 독립된 전체 배상책임을 확정하여야 하며, 피소 주체 이외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책임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의 여부 및 그 책임비율의 확정, 나아가 그들 상호간의 연대책임관계의 확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절차상 법원은 피해자가 추가하기를 요구하지 않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직권으로 피고로 추가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청구에 의해서도 피고를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가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피고로 추가 청구하여 소송에 참가시키는 목적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자기와 추가된 피청구 일방의 법률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sup>40)</sup>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사건의 당사자를 추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40)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게서, p.222.

## V. 결 론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국의 법률 및 일련의 국제협약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업자, 수입업자 및 표시제조업자를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는 제조업자의 정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오랫동안 중국에서는 제조업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왔다. 즉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제조물의 직접 제조자로 이해하고, 소송에서 제조물의 상표소유자, 부품제조업자 등이 피고가 되는 경우를 일체 배제하여 이들이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해 왔다.

그러던 중 1995년에 발생한 형기렴(荊其廉), 장신영(張新榮) 등이 미국 GM사 등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 중, 제조업자의 개념에 대하여 진일보한 해석을 하였다. 즉 제조업자의 개념을 제조물의 직접 제조자에서 확대하여 제조물의 상표 소유자 및 자기의 성명, 명칭 등 식별할 수 있는 기타 표시를 제조물에 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로 표명한 자, 즉 표시제조업자도 제조물 제조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중국의 제조업자의 범위가 종래에 비해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수입업자와 EU의 「제조물책임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품제조업자가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중국에서는 비록 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판매자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정의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1993년 지응진(支應震) 등이 산둥성 안구시 성녕공장이 생산하고 청도 송변전회사가 판매한 난방기 폭발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청도 송변전회사와 안구시 성녕공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판매자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의 하나가 송변전회사가 제조물품질책임 중의 판매자에 속하는가의 여부였는데 판결은 판매자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상 판매자는 반드시 판매를 전업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영리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물건을 팔기만 하면 제조물 책임주체인 판매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책임주체를 추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책임주체가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가? 이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로 1998년에 발생한 초위(肖威)가 진홍(陳紅) 등을 상대로 그들이 판매한 폭죽을 터뜨릴 때 손에서 폭발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다.

중국 제조물 품질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품의 제조자 또는 제품의 판매자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접 판매를 한 진홍, 황선영 부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 의해 선택된 판매자 또는 생산자는 일단 모든 제조물품질손해 배상책임, 즉 독립적으로 전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상 법원은 피해자가 추가하기를 요구하지 않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직권으로 피고로 추가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청구에 의해서도 피고를 추가할 수 없다.

## 參 考 文 獻

- 장동근·윤종성, 제조물책임법, 가람M&B, 2002.
-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 손예철, 동아프라임 中韓辭典, 두산동아, 2007..
- 이시환,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34권, 2007.5.
- , “중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책임주체, 손해배상의 범위, 면책사유 및 시효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22권 제2호, 2007.6.
- 최병록, “중국 제조물책임(PL)법의 동향”, [www.klri.re.kr/project/h\\_AsiaPublish.nsf/](http://www.klri.re.kr/project/h_AsiaPublish.nsf/) 한국조선공업협회 정책개발팀, 주요국 제조물 책임법 현황, 2003.11
- 허재창, “한국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7권 제3호, 2002.
- 허재창·한낙현, “중국의 제조물책임관련법규와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5권, 2005.2
- 董齊超, 產品質量法一本通,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5.
- 舒丹 編, 人民法院案例與評注(民事八卷),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 尹芳 編, 產品質量法配套規定,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4.
- 張慶·劉寧·喬棟, 產品質量責任---法律風險與對策, 北京, 法律出版社, 2005.
- 蔣飛云, 產品質量 200問,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 鄭遠民·李志春·朱紅梅·唐海清, 產品質量事故認定與法律處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 中國法制出版社 編, 產品質量案件,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 Delaney, H & Zande, A Guide to the EU Directive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Product Liability Directiv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1.
- Geistfeld, Mark A., *Principles of Products Liability*, New York, Foundation Press, 2006.

Owen, D.G., & Phillips, J.J., *Products Liability*, 7th ed.,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2005.

<http://www.samsungfire.com/mall/business/pl/images/info7.pdf>

## ABSTRACT

### The Defendants in Chinese Product Liability Cases

Lee, Shie Hwan

In most products liability cases, the only or principal defendant is the manufacturer that designed, manufactured, and marketed the product which injured the plaintiff. In this regards, most 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stipulates the definition of the producer. But there is no rule about the definition of the producer in China.

Yet parties in the product distribution chain other than ordinary manufacturers, notably retail seller, often profit from moving products from factories to consumers and so may bear some responsibility when product hazards injure consum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producer”, “seller” who is responsible for products liability claims in China.

This paper will contributes to help the Korean exporters, manufacturers to build up the proper countermeasures regarding products liability in China.

Key Words: Products Liability, Defendants, Producer, Seller
---